법학/03/발표논문/

명성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판의 문제점

정재훈
(CLF 기독법률가회 변호사)

1. 명성교회 사태의 경과

2. 교회재판제도의 특징

가. 권징재판, 행정재판
나. 치리회와 재판국의 관계
다. 재판국의 구성
라.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마. 변호인 제도
바. 재심제도

3. 재판시스템의 문제점

가. 사회법과 비교하여 규정들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임.
나. 법률전문가의 참여 및 관여가 부족함.
다. 판결이 일관되지 못하여 예견가능성이 매우 떨어짐.
라. 재판외적인 요소들, 즉,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

4. 대안의 모색

가. 재판규정 연구 및 개정을 위한 위원회
나. 외부 교회법 전문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
다. 내부적인 교회법 및 재판 전문가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라. 판결례의 공개시스템
마. 기존 판례변경절차의 강화
바. 재판국의 독립성 보장

법학/03/논평문/

‘명성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판의 문제점’에 관한 논평문

김정우
(숭실대 겸임교수)

1. 권징의 개념과 사유

예장통합 헌법 제2조에서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징은 회개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목적이 권징에 대한 출발점이며, 이것은 권징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저항할 수 있게 한다.[1] 그러나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권징이라는 제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정신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 예장통합 헌법은 권징의 사유가 되는 항목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징 사유의 항목들이 임의로 정해지고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권징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제시된 사유들 중에서 8항을 보면‘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권징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치리회의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전제하고 정상적인 이의 제기를 막는 것으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권징 사유를 검토할 때 성서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권징 사유에 포함시켜 오직 말씀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방식과 어긋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3] 교회법의 원천은 성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서의 본문이나 원리들을 교회법 규정의 형태로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장통합 헌법의 권징편은 적지 않은 부분들이 권징에 관한 성서신학과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사회법의 표현과 개념들을 그대로 도입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성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 할 부분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서적 근거가 빈약함에도 발전시킨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4]

2. 장로교회에서 치리회의 기능

오늘날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치리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5] 타락한 치리회는 의인을 벌하거나 진리를 매장하고 이런 치리회는 교회사에 많이 있었다.[6] 예장 통합 헌법의 경우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처럼 하위 치리회에 대한 상위 치리회의 검토와 통제라는 장로교 치리 원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위 치리회에서 발견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장로교회 치리 시스템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로교회 헌법과 한국의 장로교회 헌법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

1) G.C. Berkouwer,『개혁주의 교회론』, 이승구, 나용화 옮김,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453면.
2) 명성교회 사건관련 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면직 출교한 사건.
3) 김지훈, “한국 장로교회 권징 조례의 발전 역사와 그 신학적 문제점”,「정통개혁신학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 헌법과 권징조례의 문제점 」,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자료집, 2002, 49면.
4) 김지훈, 앞의 논문, 39면.
5) 황규학,『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안, 2007, 249면.
6) 박윤선,『개혁주의 교리학』, 영음사, 2003, 402-403면.

원리들을 선언하고 이것이 반영된 합리적인 절차들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원리들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절차들도 원리들이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편적인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장로교회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다[7]는 지적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평가라고 생각된다. 장로교 정치는 무엇보다 교회의 권세를 1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면과 하위 치리회에서 부당하게 치리된 일들을 상위 치리회에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만약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이 담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하위 치리회의 정당한 요구가 상위치리회에서 교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무시한 처사이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 치리회의 구성은 신자들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로 가능한 영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위하여 결정된 것인데, 장로교회의 치리회가 평신도들의 감정을 무시하여 의사진행을 꾀한다고 상상할 때 장로회 주의를 이 정도로 심하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없다.[8]

3. 재판의 원칙 및 재판국원의 자격

제4조 3항에서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장로교(PCA) 헌법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국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재판국원의 윤리적 자격,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장통합 헌법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력 면에서는 교단 내의 교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조 인력을 재판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격의 부분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제15조 1항에서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법리부서장 중에서 선임하며 2항에서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원에 교단 내의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직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9] 제21조 1항에서 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회재판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때,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총회가 선정하여 노회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재판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회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원인의 대부분은 재판국원들이 교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적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회재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맥과 학맥과, 금권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전문가가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10]

재판국원의 법조 윤리에 관한 규정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 재판관의 법조 윤리의 내용들을 교회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 (1245년 제1차 리옹

---

7) 손병호, 『교회헌법학 원론』, 유앙게리온, 2001, 45-47면.
8) John Macperson,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이종전 옮김, 아벨서원, 1998, 158면.
9) 이상민, "교회 내 분쟁의 사회법 절차에 따른 해결에 대한 검토", 「목회자와 교회정치」,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자료집, 기윤실, 2013, 33면.
10) 황규학, 『장로교회는 없다』, 에큐메니칼연구소, 2005, 59면.

공의회 제15조)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교회의 재판관들은 소송에 있어서 증오심으로 복수하지 않고, 특혜를 남용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례나 보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정의를 뒤집어엎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손에 저울을 들고, 공평의 저울에 무게를 달고, 소송의 의사일정에 있을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히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막에 들어가 백성의 탄식을 주님께 전달한 모세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교회의 정식 재판관이나 대리인이 타인의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하고, 양심과 정의를 거슬러 재판에서 친분이나 비리 때문에 다른 한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1년간 직무집행에서 정지를 당한다. 그 외에도 손해를 끼친 쟁송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부당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는 형벌을 정하여 부과하는 다른 법령들도 유효하다.[11]

4. 총회특별재심 - 2017년 총회에서 폐지 결의, 헌법 개정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폐지

5. 재판국의 전문성 결여 - 세습방지규정의 해석 문제 (법망을 피해가는 해석)

6. 판례의 축적 및 공개 - 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7. 소송관련규정의 보완 - 교단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작업 시도

8. 재판규정 연구 및 개정을 위한 위원회 - 교단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업 부재

9. 재판국원 구성의 변화

(1) 외부 교회법 전문가 참여

1) 필요성 - 명성교회 재판 판결문 (교회법이론을 국가법 변호사들이 방어하는데 한계)

2) 한계 : 고용된 총잡이의 폐해

(2) 내부적으로도 전문가 육성의 필요 : 교단 인력풀의 현실적 한계

10. 진단과 제안

(1) 비교 교회법 연구[12]를 통한 현행 교회헌법 검토 및 교회재판 평석[13]

(2) 하나님의 양심에 사로잡힌 a few good men의 역할 중요 :

cf) 독일의 루터주의 법률가 Johann Oldendorp의 법철학

(3) CLF 교회법연구회 창설 제안 : 교회법학자와 기독변호사의 협력 사역 필요

---

11) 한동일,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2013, 124-125면.

12) 김정우, "미국 장로교회법에 비추어 본 예장통합 헌법연구",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연구』,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13) 명성교회 총회 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필자의 교회법적 비판의 내용은 교회재판상담연구소 제1회 교회법토론마당, 명성교회사건과 교회법적인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sAi45kI3x4M.